

# 일반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※ 신종코로나(COVID19)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 
(본인 또는 대리인 외 동반 1인 까지 입장 가능)

구분	필수	해당자 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"아파트 계약용"으로 직접 기재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•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※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※ 개명 시 개명전/후 출입국사실증명원 모두 제출
	○		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	본인	•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b>[별첨1.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증빙서류]</b> 참고하여 발급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가점제 신청자 추가서류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 존·비속	•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 존·비속	•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인정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1년 이상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손자녀	•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
부적격 당첨 통보자	○		무주택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신 청서 등 • "소형 자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기관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제출시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(인감날인) 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"서류제출 위임용"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일반공급 서류제출 안내문

## 별첨 1.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

필수	해당자 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						
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당사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서류</td> </tr> <tr> <td>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</td> <td><b>파견 및 출장명령서</b></td> </tr> <tr> <td>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</td> <td><b>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</b></td> </tr> <tr> <td>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</td> <td>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</td> </tr> </table> <p>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               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 체류자,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생업사정 불인정</p>	해당사항	제출서류	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	<b>파견 및 출장명령서</b>	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	<b>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</b>	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	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
해당사항	제출서류											
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	<b>파견 및 출장명령서</b>											
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	<b>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</b>											
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	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											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국내 거주 확인</li> <li>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</li> </ul> <p>※ 출입국기록 :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               ※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</p>								
○		체류국가 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※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불인정</li> </ul>								

# 기관추천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※ 신종코로나(COVID19)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 
(본인 또는 대리인 외 동반 1인 까지 입장 가능)

구분	필수	해당자 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(용도 : "아파트 계약용"으로 직접 기재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•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※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 여부 확인 시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	
부적격 당첨 통보자	○		무주택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기관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제출시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(인감날인) 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"서류제출 위임용")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다자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※ 신종코로나(COVID19)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 
(본인 또는 대리인 외 동반 1인 까지 입장 가능)

구분	필수	해당자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(용도 : "아파트 계약용"으로 직접 기재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•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※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산정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※ 개명 시 개명전/후 출입국사실증명원 모두 제출
	○	○	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	본인	•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[별첨1.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증빙서류] 참고하여 발급
	○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	○		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존속	• 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존속포함)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	• 임신의 경우 (견본주택 비치)
	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
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(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)	
부적격 당첨 통보자	○	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기관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제출시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(인감날인) 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"서류제출 위임용")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다자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## 별첨 1.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

필수	해당자 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						
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해당사항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제출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</td> <td>파견 및 출장명령서</td> </tr> <tr> <td>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</td> <td>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</td> </tr> <tr> <td>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</td> <td>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               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 체류자,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생업사정 불인정</p>	해당사항	제출서류	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	파견 및 출장명령서	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	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	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	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
해당사항	제출서류											
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	파견 및 출장명령서											
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	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											
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	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											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국내 거주 확인</li> <li>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</li> </ul> <p>※ 출입국기록 :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               ※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</p>								
○		체류국가 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불인정</p>								

#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※ 신종코로나(COVID19)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 
(본인 또는 대리인 외 동반 1인 까지 입장 가능)

구분	필수	해당자 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(용도 : "아파트 계약용"으로 직접 기재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•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※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※ 개명 시 개명전/후 출입국사실증명원 모두 제출
	○		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	본인	•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b>[별첨1.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증빙서류]</b> 참고하여 발급
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	
노부모 특별공급	○		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손자녀	•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속	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비속	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 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 존·비속	•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인정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1년 이상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	
부적격 당첨 통보자	○	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기관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제출시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(인감날인) 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"서류제출 위임용"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## 별첨 1.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

필수	해당자 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						
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해당사항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제출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</td> <td>파견 및 출장명령서</td> </tr> <tr> <td>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</td> <td>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</td> </tr> <tr> <td>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</td> <td>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               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 체류자,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생업사정 불인정</p>	해당사항	제출서류	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	파견 및 출장명령서	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	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	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	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
해당사항	제출서류											
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	파견 및 출장명령서											
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	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											
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	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											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국내 거주 확인</li> <li>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</li> </ul> <p>※ 출입국기록 :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               ※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</p>								
○		체류국가 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불인정</p>								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※ 신종코로나(COVID19)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 
(본인 또는 대리인 외 동반 1인 까지 입장 가능)

구분	필수	해당자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(용도 : "아파트 계약용"으로 직접 기재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•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※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※ 개명 시 개명전/후 출입국사실증명원 모두 제출
	○		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	본인	•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[별첨3.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증빙서류] 참고하여 발급
○		복부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	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세대원	•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(과거이력 포함)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(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전원 제출 ※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Fax 수신 문서 가능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소득증빙서류 (재직증명서 포함)	본인 및 성년세대원	•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 [별첨1.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]를 참고하여 발급 ※ 직인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(Fax 및 복사본 접수 불가)
	○	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은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 및 전 세대원 (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의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※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전 세대원 별 이름/호외결과 보이게 화면캡처하여 출력 ※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(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"공개"에 체크)
	○		소유 부동산 관련 서류		• 본인 및 전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,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 [별첨2. 부동산 자산보유 확인서류]를 참고하여 발급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로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원본 제출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직인날인,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)
	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,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	• 임신의 경우 (견본주택 비치)
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성년세대원	• 견본주택 비치 (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	
부적격 당첨 통보자	○	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기관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제출시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(인감날인) 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"서류제출 위임용")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## 별첨 1.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자료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'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'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'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'을 제출	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(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)	①,②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②해당직장
	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해당	①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	①,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①세무서 ②국민연금공단/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원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	①세무서/등기소 ②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해당직장/세무서 ②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행정복지센터	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	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- 견본주택에 비치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	①견본주택 비치	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  
 ※ 상기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 
 ※ 상기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## 별첨 2. 부동산 자산보유 확인서류(추첨제 신청자 추가서류)

※ 본인 및 세대원의 부동산소유현황조회 결과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만 추가 제출

※ 아래 서류 외 소유현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해당 부동산		제출서류	발급처
건축물	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①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서	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/지자체
	단독주택	①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서	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/지자체
	주택 외 (상가, 오피스텔 등)	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②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서	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/지자체 ② 서울[이택스], 그 외 지역 [위택스] /지자체
토지 (공동주택 외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)		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/지자체 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/지자체
토지 제외 (해당자)	농지 (농지법 제2조제1호)	① 농지원부 ②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	① 정부24/지자체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/지자체
	초지 (초지법 제2조제1호)	① 축산업허가증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③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	① 지자체 축산과 ② 토지e음(eum.go.kr)/지자체 ③ 대법원인터넷등기소/지자체
	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(공공용지)	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또는 토지대장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/정부24
	중중소유 토지 (건축물 포함), 또는 문화재 건립 토지	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②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/등기소

###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시 자산이 없는 경우 화면 출력 방법

※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> 부동산 소유현황 > 조회결과 아래 화면이 보이도록(이름 및 조회 내역 없음 확인) 화면 캡처하여 출력하며,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조회결과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일반신청
포괄승계인신청

신청인

- 신청인구분 내국인
- 성명(명칭) 홍길동
- (주민)등록번호            -
- 공개여부  (주민)등록번호 공개

검색

-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(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)를 통한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인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● 조회명의인

신청하신 성명(명칭), (주민)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.  
소유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## 별첨 3.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

필수	해당자 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						
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해당사항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제출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</td> <td>파견 및 출장명령서</td> </tr> <tr> <td>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</td> <td>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</td> </tr> <tr> <td>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</td> <td>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               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 체류자,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생업사정 불인정</p>	해당사항	제출서류	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	파견 및 출장명령서	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	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	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	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
해당사항	제출서류											
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	파견 및 출장명령서											
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	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											
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	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											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국내 거주 확인</li> <li>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</li> </ul> <p>※ 출입국기록 :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               ※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</p>								
○		체류국가 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불인정</p>								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※ 신종코로나(COVID19)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(본인 또는 대리인 외 동반 1인 까지 입장 가능)

구분	필수	해당자 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"아파트 계약용"으로 직접 기재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•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※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·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공개 '상세'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※ 개명 시 개명전/후 출입국사실증명원 모두 제출
○		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	본인	•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[별첨4.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증빙서류] 참고하여 발급	
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	
생애최초 특별공급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세대원	•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(과거이력 포함)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전원 제출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※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Fax 수신 문서 가능
	○	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본인	•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[별첨1.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] 참고하여 발급
	○		소득증빙 서류 (재직증명서 포함)	본인 및 성년세대원	•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 [별첨2.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]를 참고하여 발급 ※ 직인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(Fax 및 복사본 접수 불가)
	○	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은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 및 전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의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※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전 세대원 별 이름/조회결과/소유이계 화면캡처하여 출력 ※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(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"공개"에 체크)
	○		소유 부동산 관련 서류		• 본인 및 전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,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 [별첨3. 부동산 자산보유 확인서류]를 참고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존속	•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1년 이상 부양하여 가구원수 포함 및 소득 산정한 경우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 전체 포함하여 발급)
	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가 입양한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(배우자가 없는 경우)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
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성년세대원	• 견본주택 비치 (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	
부적격 당첨 통보자	○	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기관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제출시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(인감날인) 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"서류제출 위임용"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## 별첨 1.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

해당자격	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자격 입증 서류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 안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
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소득금액증명원(납부내역증명 포함) ※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
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-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 (종합소득세 납부자) ※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직인날인)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/세무서 ③ 해당직장/세무서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상기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## 별첨 2.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자료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'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'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'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'을 제출	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(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)	①,②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소득명세서상 "주(현)"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②해당직장
	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해당	①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	①,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①세무서 ②국민연금공단/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원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	①세무서/등기소 ②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해당직장/세무서 ②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행정복지센터	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	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- 견본주택에 비치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	①견본주택 비치	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  
 ※ 상기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 
 ※ 상기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## 별첨 3. 부동산 자산보유 확인서류(추첨제 신청자 추가서류)

※ 본인 및 세대원의 부동산소유현황조회 결과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만 추가 제출

※ 아래 서류 외 소유현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해당 부동산		제출서류	발급처
건축물	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①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서	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/지자체
	단독주택	①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서	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/지자체
	주택 외 (상가, 오피스텔 등)	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②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서	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/지자체 ② 서울[이택스], 그 외 지역 [위택스] /지자체
토지 (공동주택 외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)		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/지자체 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/지자체
토지 제외 (해당자)	농지 (농지법 제2조제1호)	① 농지원부 ②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	① 정부24/지자체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/지자체
	초지 (초지법 제2조제1호)	① 축산업허가증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③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	① 지자체 축산과 ② 토지e음(eum.go.kr)/지자체 ③ 대법원인터넷등기소/지자체
	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(공공용지)	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또는 토지대장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/정부24
	중중소유 토지 (건축물 포함), 또는 문화재 건립 토지	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②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/등기소

###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시 자산이 없는 경우 화면 출력 방법

※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> 부동산 소유현황 > 조회결과 아래 화면이 보이도록(이름 및 조회 내역 없음 확인) 화면 캡처하여 출력하며,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조회결과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일반신청
포괄승계인신청

신청인

- 신청인구분 내국인
- 성명(명칭) 홍길동
- (주민)등록번호            -
- 공개여부  (주민)등록번호 공개

검색

-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(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)를 통한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인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● 조회명의인

신청하신 성명(명칭), (주민)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. 소유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## 별첨 4.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

필수	해당자 (추가)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						
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해당사항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제출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</td> <td>파견 및 출장명령서</td> </tr> <tr> <td>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</td> <td>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</td> </tr> <tr> <td>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</td> <td>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               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 체류자,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생업사정 불인정</p>	해당사항	제출서류	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	파견 및 출장명령서	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	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	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	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
해당사항	제출서류											
국내기업·기관소속이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	파견 및 출장명령서											
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	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											
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	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											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국내 거주 확인</li> <li>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</li> </ul> <p>※ 출입국기록 :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               ※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</p>								
○		체류국가 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불인정</p>								